

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
판 결

사 건 2025고정218 절도
피 고 인 A
검 사 임기웅(기소), 정다완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지효준(국선)
판 결 선 고 2025. 12. 3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2025. 3. 20. 09:32경 부산 강서구 B건물 4층 문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성명불상자(여, 베트남 국적) 소유인 시가 189,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.

2. 판단

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주문한 택배가 피해자 거주지인 2층이 아닌 4층에 오배송이 되었는데, 이를 피해자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.

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택배기사가 2025. 3. 20. 8:50경 이 사



건 건물 4층에 상품을 배송한 사실, 같은 날 9:30경 피고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4층으로 올라갔다가 9:32경 내려온 사실, 같은 날 10:40경 건물관리자가 4층으로 올라갔다가 11:00경 청소용품을 들고 내려온 사실, 피해자가 같은 날 11:48경 택배기사에게 택배물품이 없다는 연락을 한 사실, 택배기사가 4층에 오배송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, 피해자가 같은 날 11:53경 4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검사는 위와 같이 물품 오배송 이후 피해자가 4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사이에 4층을 올라간 사람이 피고인 외 1명뿐이고, 피고인 외 1명은 4층에서 내려올 때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고, 택배상자를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, 피고인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므로, 그 안에 택배상자를 숨겨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

반면, 피해자는 자신은 빨래 건조를 위하여 빨래 바구니를 들고 4층 옥상에 다녀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위 4층은 복도와 옥상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는데 복도 부분에 청소 물품 등 각종 물건이 산재해 있어 택배상자를 숨길 공간이 충분해 보이므로, 4층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만으로 절취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, 또한 피해자가 위 11:53경 4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, 당시 4층에 실제 택배가 없었는지는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, 택배기사가 직접 4층을 가서 확인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배송 시점부터 피해자가 4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점까지의 4층 출입자만이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피해자는 택배기사에게 이웃 외국인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바 있는데,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실제 물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 체류 발각 등의 우려로 수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



등을 종합하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.

판사 조실 _____